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방법 개선

I. 검토배경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3.12 시행)되어 현행 동의서 징구방법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징구하고자 함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따른 동의서의 제출조건이 해당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정보를 제공·활용시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

II. 현행제도

- 현재 신용평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한도거래약정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위해 동의서에 조합업무 거래사항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여 징구
 1. 제출 시기
 - 신용평가서류 제출시
 - 건설업 등록을 위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정기 및 수시 평가, 대표자 변경에 따른 재평가
 - 개인 최다주식보유자가 약정연대보증하는 경우
 - 대표자 이외의 제3자 주민등록번호의 제공
 2. 제출 방법
 -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조합직원 입회시 본인의 자필서명 및 신분증제출
 - 우편 제출시에는 개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III. 개정 내용

- 개인신용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 동의목적(업무내용)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서 세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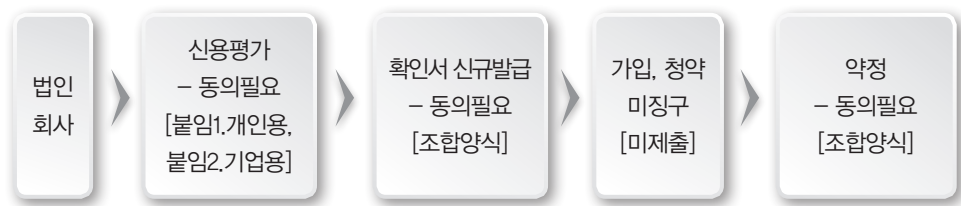
동의서 종류		동의 목적(업무 내용)
신용평가(개인) [붙임 1]		신용평가
예치, 가입, 탈퇴 관련		조합가입, 출자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 출자증권 발행, 출자지분의 양수도, 지분취득 및 관리, 출자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신고, 제증명발급
기업용 [붙임 2]		조합원(개인사업자 생략)
약정	연대보증인용(개인)	대표자, 최다주식보유자, 최다주식보유법인의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용(법인)	최다주식보유법인 등
담보제공용		대표자 또는 제3자의 물적, 인적 담보 제공시
출자증권명의개서, 지분반환 관련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 외 제3자에게 출자증권 명의개서, 출자(예치)금 반환, 배당금청구업무, 업무안내
조합원사담당자용		조합과의 업무거래를 위한 조합원사 담당자의 개인정보
개인보증채권자용		개인보증채권자

- “기업용”은 기업정보 조사를 위해 징구(신용정보, 추심 등)
-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동의서는 최초 1회 징구 후 신용정보 제공주체가 변경되면 다시 징구

○ 시행일 : 2016. 3. 12

○ 동의서 징구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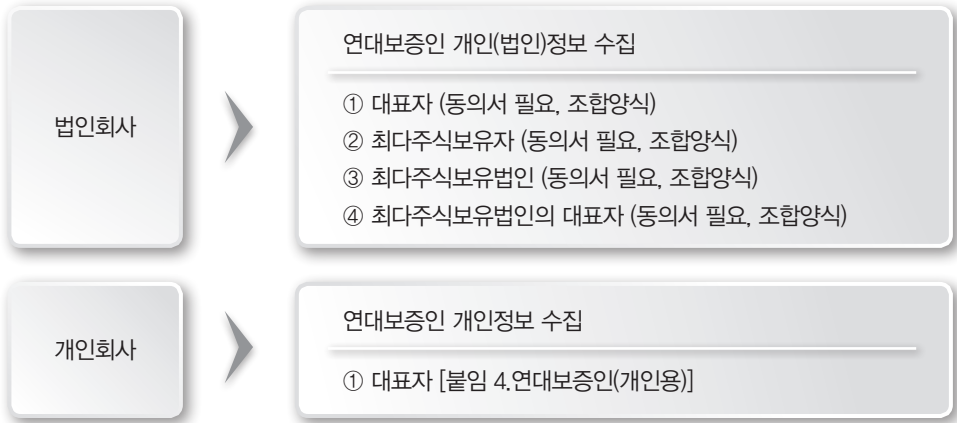
1. 조합원 신규가입 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방법 개선

- 개인회사 : 위 흐름과 동일(신용평가 시 기업용은 미제출)

2. 약정 시



3. 그 외의 경우에는 신규 개인정보 수집필요 시 각 동의서의 수집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제출

붙임 : 동의서 양식 샘플 1부 





개인정보 등서
제출방법 개선

(붙임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등서서(신용평가용)

조합원번호 : _____ 상 호 : _____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귀중
귀 조합의 신용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귀 조합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조합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 신용평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이용 항목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필수적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식별정보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신용거래정보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 담보제공 현황, 신용카드 이용 정보 등 여신정보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된 발생사실 등] 공공정보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선택적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정보 외에 신용평가 신청서 및 조사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제작년수, 기술자격, 주거 및 가족사항 등 </div>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 목적 달성 및 거래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거래 종료 후에는 조합의 신용평가 이력관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조합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신용평가 및 업무거래를 위하여 필수적이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 확정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신용등급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조회회사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주)이코테이블 등] 건설관련조합·협회 및 공공기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국토교통부, KISCON, (재)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 조합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무제휴사 등
제공(조회)받는 자의 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정책자료로 활용 건설관련협회 및 공공기관 법령에 따른 제공 또는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 당 조합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무제휴사 신용도판단 및 업무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목적이행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명,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 담보제공 현황, 신용카드 이용 정보 등 여신정보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도판단정보 : 채무불이행,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및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수신하는 CB Score 등 업무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기타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조회 목적 및 기간	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함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 조합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업무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본인 관련 채권·채무판계가 전부 청산되는 시점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조합 신용평가에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평가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p>귀 조합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선택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p>귀 조합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p> <p>(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제공·조회 동의 여부	<p>귀 조합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상기 모든 항목은 본인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서명을 할 경우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시에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방법 개선

(붙임 2)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기업용)

조합원번호 : _____ 상 호 : _____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귀중
귀 조합과의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귀 조합이 당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업무거래라 함은 약정, 보증, 용자, 공제, 신용평가, 출자, 담보제공, 채권관리, 교육서비스 등을 의미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업무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채권추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항목	<p>[필수적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별정보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 등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영업실태, 종목, 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 등 신용거래정보 대출현황 및 보증채무, 담보제공 현황, 신용카드 이용 정보 등 여신정보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된 발생사실 등] 공공정보 기타 업무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재산사항 및 은행거래정보 등 <p>※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기업(신용) 정보도 포함합니다.</p>
보유·이용 기간	위 기업(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 목적 달성 및 거래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거래 종료일 후에는 보증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조합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귀사 관련 채권·채무관계가 전부 청산되는 시점까지 수집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기업(신용)정보에 동의하지하면 업무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업무거래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조회회사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주)이크레디탈 등] 수탁(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채권추심업체 : 나라신용정보(주), SCI평가정보(주) 등(추가 또는 변경 가능) 건설관련조합·협회 및 공공기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국토교통부, KISCON, (재)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 조합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무제휴사 등
제공(조회)받는 자의 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귀사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정책자료로 활용 수탁(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채권추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건설관련협회 및 공공기관 ▶ 법령에 따른 제공 또는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 당 조합과 계약관계가 있는 업무제휴사 신용도판단 및 업무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목적이행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식별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 등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영업실태, 종목, 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황 및 보증채무, 담보제공 현황, 신용카드 이용 정보 등 여신정보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도판단정보 : 채무불이행,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및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수신하는 CB Score 등 업무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기타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p>※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기업(신용) 정보도 포함합니다.</p>
제공받은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조회 목적 및 기간	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함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 조합의 조회 결과 귀사와의 업무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귀사 관련 채권·채무관계가 전부 청산되는 시점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업무거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 하셔야만 업무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조합이 위와 같이 당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조합이 위와 같이 당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법인인감을 날인할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시에는 법인인감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_____
상 호 : _____ (인)
대 표 자 : _____
사업자번호 : _____



인증서갱신 이용안내

가. 인증서갱신이란?

설비조합 온라인지점을 이용하기 위해 타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시던 인증서가 만료되어 재발급 받은 경우 또는 신규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 인증서를 설비조합에 등록해야 합니다.

나. 갱신방법

설비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인증서갱신을 클릭하거나 온라인지점에서 타기관인증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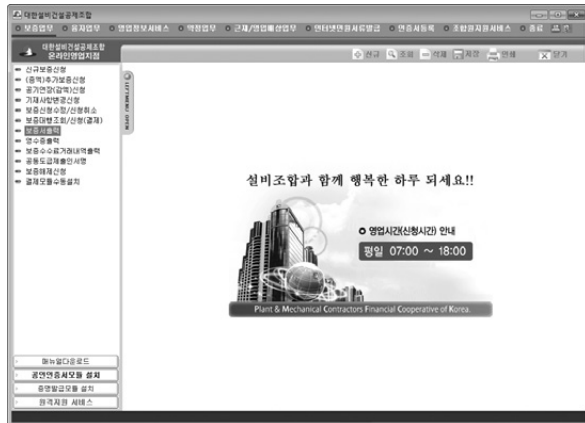
1) 인증서 갱신 선택

①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갱신”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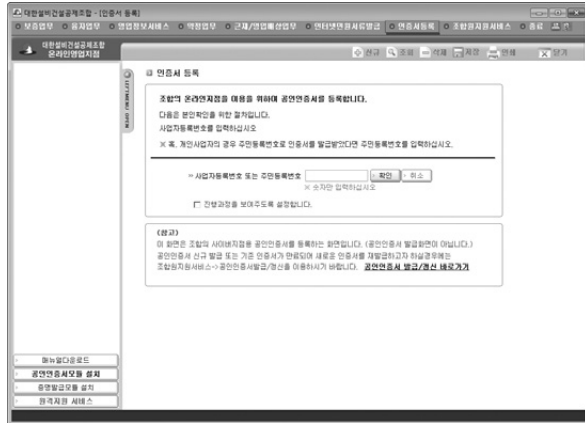


인증서갱신
이용안내

② 온라인지점에서
“인증서등록”을 클릭



2) 타기관인증서를 등록하는 화면




3)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혹,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서를
발급 받았다면 주민번호를
입력하십시오)

4) 오른쪽과 같이
설치되어 있는 인증서가 나타납니다.



5) 등록할 인증서를 선택하신 후 비밀번호를 입력
하면 정상적으로 갱신이 완료됩니다. 갱신 완료
후 온라인지점이 종료되며 온라인 지점 재접속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

※ 여러 개의 인증서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후 온라인지점 이용 시 등록
된 인증서를 선택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합업무 묻고 답하기

조합업무
묻고 답하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기계대여 계약서가 없으면 보증서 발급이 불가한지?

- ☞ 건설기계 사용 요청 시 대여계약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서가 없는 대여건은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일대 계약시 대여횟수 미정의 이유로 대여계약금액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증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 ☞ 건산법의 보증금액 산출방식에 따라 대여계약금액을 확정해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 간 주 00회 또는 월 00회 또는 사용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 후 대여횟수 및 금액이 증가된 경우 증액된 보증금액으로 추가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대 계약인 경우도 보증서 발급 대상인지?

- ☞ 일대 계약도 보증서 발급 대상입니다. 단, 당일 사용, 당일 대금결제인 경우는 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건설기계대여계약이 보증 대상인지?

-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1건 계약금액(부가세포함)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서 면제대상의 공사도중 대여금액 증액 시 보증서 발급대상에 해당되는지?

- ☞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증액되는 시점에서 보증서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조합업무
문고 답하기

원도급자가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할 경우 보증 면제대상인지?

☞ 원도급자 직불은 보증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보증서 미제출시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 영업정지처분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이 부과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포괄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인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도 면제되는지?

☞ 포괄대금지급보증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건산법 제68조의3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대상 건설기계는?

☞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27종)를 말하며, 유사장비라 하더라도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는 장비는 보증대상이 아닙니다.(예: 화물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참조

보증 가능한 건설기계대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제출받아 등록된 대여업자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은 그 대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아닌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나머지 구성원(연명등록자)은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명등록자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명등록자 소유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상 '대여업체 및 사용본거지'가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상의 '상호 및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 상의 최종 소유자는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연명 등록자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여부는?

☞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당사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기계가 (가)압류 상태인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 기계 대여에 문제가 없으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압류 관련으로 기계사용의 문제발생 시 채권자(기계대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제업무

조합업무
문고 답하기

산재보험 미가입 시 근재보험 가입가능여부?

☞ 반드시 산재를 가입한 업체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재상품의 보상범위가 산재를 초과하는 보상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 산재사고처리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재가입 시 1인당 1억원을 보상한도로 가입했는데 사고 시 1억원을 보험금으로 받을수 있는 건가요?

☞ 1억원을 정액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1억원은 보상한도이므로 사고로 인해 산정한 손해배상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직만 근재를 가입한 경우 내근직 사원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여부는?

☞ 내근직 사원에 대하여 별도로 근재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내근직 사원에 대한 공제요율은 현장직 대비 20%대에 불과하므로, 내근직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 조합원께서는 연간계약 가입을 권유드립니다.

원수급인이 여러개인 경우 어느 회사를 원수급인으로 하나요?

☞ 각각의 도급비율을 확인한 후 도급비율이 큰 업체를 원수급인으로 입력합니다. 필요시 추가기재사항란에 나머지 공동수급인의 입력도 가능합니다.

공사장별계약인 경우, 세부 공사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 확인되는 부분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성공단의 경우는 당연히 우편번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에는 조합원 본사 주소를 등록해 주시고, 추가기재사항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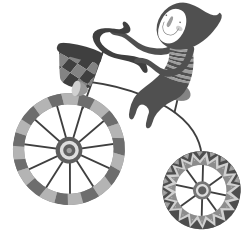
영업배상책임공제에서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 손해액 중에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정금액을 말하며, 보험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이 자기부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액을 설정하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빈번한 작은 손해 사고에 대해서 재해조사나 이채처리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대신에 보험계약자에게는 자기부담금액 설정에 따른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 위함입니다.

※ 보험금 = 손해액(배상책임액) - 자기부담금액 

생활 속 법률

자전거



추운 겨울이 꼬리를 내리고 한낮에는 햇빛의 따사로움을 느낄 수 있는 봄날이 왔다. 자주 산책하는 양재천을 걷다보면 자전거를 타고 한낮의 여유로움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힘차게 타는 사람, 음악을 듣는 듯이 여유롭게 타는 사람, 커플 자전거를 타는 다정한 연인, 제각기 타는 모양은 달라도 모두 얼굴 한켠에 행복함이 묻어 있다.

그런데 잠시 딴 곳에, 예를 들면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마침 옆에서 멋진 여성의 뛰는 모습에 넋을 잃다가(필자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다른 자전거와 충돌하여 상처를 입혔다면? 또는 부근에서 조깅하던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면?

이럴 때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진다. 그렇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고 하자)상 업무상 과실치상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까? 정답은 이런 경우에도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다. 심지어 법률 전문가인 주위의 변호사들조차도 이와 같은 경우에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필자도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몰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항을 종합하여 보면 ‘차에는 자전거도 포함된다.’라고 되어있다. 즉, 자전거를 타는 도중에 과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딴 짓’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와 동일하다. 그렇지만 자동차사고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전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에서 규정하는 도주차량-뺑소니-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자전거를 타고 사고를 낸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를 하더라도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고 자전거 사고를 낸 후에 도망치라는 얘기는 아니다. 만약 도망치다가 잡히면 일단은 창피하고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다른 하나는 자전거는 종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는 것과 형사 처벌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는가? 교특법 제4조에서는 비록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몇 가지 사안(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른 말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만약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합의를 해야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전거를 주행하다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그 외에 형사상 합의까지 하여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만 전과자가 되지 않는다.



기고


필자가 맡은 사건 중에 한강에서 의뢰인이 자전거를 타던 중 앞에서 중년 여성이 타고 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려고 가속을 하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의뢰인은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그와는 별도로 형사상 합의(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까지 하여 가까스로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기는 했으나 그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경제적 손실은 별론으로 하고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은 상당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니 ‘자전거를 탈 때 제발 앞 좀 보고 천천히 타시기’를 바란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 보면 자전거 하나에 핸들이 두 개가 달린 커플 자전거를 탄 행복한 연인들이 보인다. 문득 만약 저 커플 자전거에 탄 연인이 사고를 낸다면 누가 책임을 질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 특히 앞좌석 여자가 핸들 조정을, 뒷좌석 남자가 힘차게 페달을 밟는 경우라면?

형사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동정범¹⁾으로 위에서 언급한 형사 책임을 질 것이고, 민사상으로는 피해자에 대해 각자가 사이 좋게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부진정 연대)을 질 것이다. 다만, 한 사람이 손해를 전부 배상한 경우라면 나머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잘못된 비율 만큼 구상할 것이다. 물론 다정한 연인인 경우에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전부 부담하겠지만.

그런데, 아주 만약에, 절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전거 체인이 엉켜서 자전거가 전복되어 심하게 다치게 되었다면 누구에게 이 억울함을 호소할 것인가(특히 당신이 자전거 점포에 가서 물어보니, 원래 자전거 체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인의 말을 들었다면)?

그렇다면 그 때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자전거를 제조한 사람에게 당신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면 될 것이고, 만약 당신이 타고 있는 자전거가 값비싼 외국 제품이라면 그 때는 그 자전거를 수입한 사람에게 청구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사람이 청구사실을 입증하는데 반하여, 이런 사건에서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소위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한다).

아파트 밖 베란다에는 세대의 자전거가 있다. 필자의 자전거, 아들의 자전거 그리고 처의 자전거. 가만히 아들 자전거 안장에 손을 대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진다. 이번 주말에는 아들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나 가볼까? 

1)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온’ 변호사 이 호 진

전화번호 : 02-6203-0703, 이메일 : ephitor@naver.com

- 사법연수원36기
- 서울중앙 국선전담변호사
- 법무법인 태일 구성원 변호사(전)
- 現)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위원

말하기 능력은 살아가는 능력과 직결

대구 · 경북지점 정용훈



아들러식 대화법
저자 : 도다 구미 | 출판사 : 나무생각

최근 발간되고 있는 자기계발 도서 중에는 제목에 ‘대화’와 ‘소통’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책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관계를 시작으로 학교, 친구, 회사, 조직, 취미 등등 일생동안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관계를 이어주는 소통수단이 바로 ‘대화’인 것이다.

이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가? 대화가 없는 인간관계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마치 자동화된 무인생산 라인처럼, 일은 하고 있지만 아무런 느낌도, 냄새도, 온기도, 애정도, 분노도, 기쁨도 없이 늘 같은 일을 반복하는... 기계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기계에는 소통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과 단결을 하고, 실망하기도, 분노하기도 하며, 때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어 내는 큰 업적과 성과를 내기도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대화’인 것이다. 따라서 대화 즉, ‘말하기 능력’은 살아가는 능력과 직결된다.

이 책은 저자가 실질적으로 상담한 경험적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기술, 그 토대가 되는 마인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들러(Alfred Adler)라는 심리학자의 이름 때문에 철학적이고 어렵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매일 겪는 생활 가운데 매순간에 적용할 수 있다. 「PART5 - 상황에 따라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업무편)」 중 업무 중에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 각자 난처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면 되는지 등 다양한 사례를 읽다보면 이 책의 제목 앞에 달린 ‘가슴에 바로 전달되는’이란 수식어에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은가?’를 생각할 때 자신이나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